

병성천권역(병성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21. 10



국 토 교 통 부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제 1 장 계획의 내용

1.1 계획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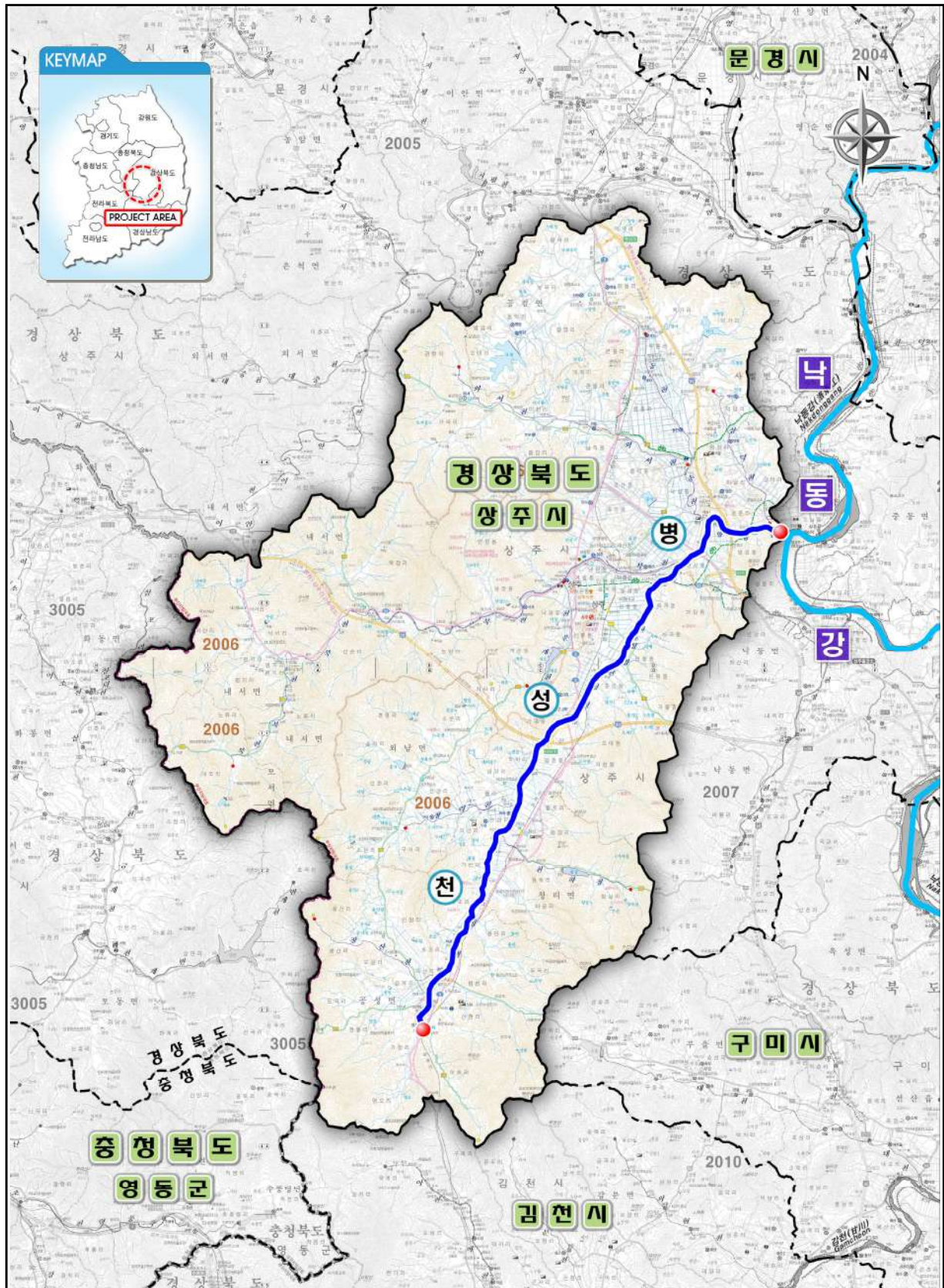
- 현행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행정구역 단위로 수행되어,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의 수립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하천의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며, 수계 내 하천간의 기본계획 수립시기, 수립주체 등이 서로 상이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협의·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문제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 현황과 수리 현황의 보전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대장화하고, 전산화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에 있어 이익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1.2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19. 07. 15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1. 05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21. 06 07 ~ 07. 0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및 심의
- 2022. 0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예정)
- 2022. 0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예정)
- 2022.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및 협의요청(예정)

1.3 계획의 내용

- 사 업 명 : 병성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연 장 : L=30.00km
 - 시점 :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영오리 564-2
 - 종점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720-1(낙동강 합류점)
- 계획수립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승 인 기 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협 의 기 관 : 대구지방환경청



<그림 1-1>

계획하천 위치도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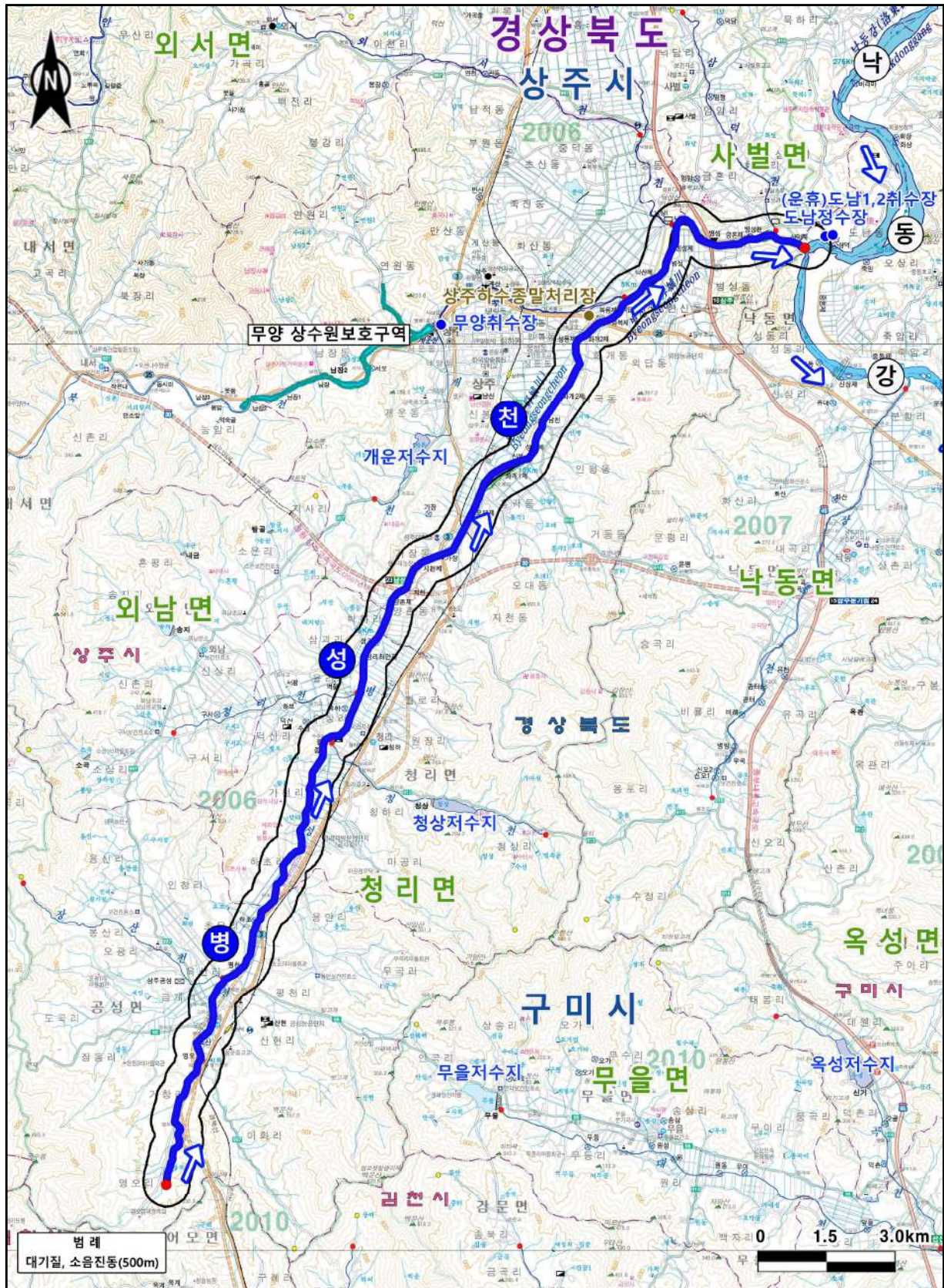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공사시 토지 편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건설장비 가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발생, 공사시 폐기물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항목별 계획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구 분		평가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계획수립에 따른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계획수립에 따른 지형 및 생태축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수환경의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계획수립에 따른 수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하천경계로부터 500m)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건설장비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소음·진동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하천경계로부터 500m)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토 양	◦계획하천	◦공사시 폐유 및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공사시 지장물 철거 및 건설장비 운용에 따라 토양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계획하천	◦계획수립으로 인해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그림 2-1>

대상지역 설정도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항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을 참고하고, 계획의 특성, 인근 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중점평가항목, 일반항목 및 제외항목 선정

구 분	중점평가항목		일반항목	제외항목
1.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의 개요 대안의 설정	-
2.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위락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기상	악취, 위생공중 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	-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온실가스
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토지이용	토지이용	-	-	인구·주거, 산업

<표 2-3>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구 분		세부 항목	결정 결과	사 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평가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이 변화
		자연환경자산	평가	◦계획하천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평가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토사유출, 비탈면 발생 등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 락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경 관	평가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 질	평가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수리·수문	평가	◦계획시행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파악
		해양환경	제외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평가	◦대기질 영향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평가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건설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악 취	제외	◦본 계획으로 인한 악취영향 없음
		토 양	평가	◦공사시 토양에 미치는 영향
		소음·진동	평가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위생공중보전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전파장해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일조장해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제외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미미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온실가스	제외	◦본 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미미
친환경적자원순환		평가	◦공사시 지장물 철거, 수목 훼손,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등 발생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평가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인구·주거	제외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없음
		산 업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2.3 평가 범위 및 방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 등에 대하여 영향·예측을 수행하여, 예측 결과에 따라 적정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표 2-4>과 같으며, 항목별 현황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임

<표 2-4> 평가 범위, 방법 및 검토내용

구 분		평가 범위 및 방법		검토내용
		평가 범위	평가 방법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현지 및 문헌조사 (탐문조사 포함) ◦사업계획 분석	◦식물상 및 식생현황, 육상·육수동물상 현황 파악 및 영향 예측 ◦자연환경자사 현황 파악 및 영향 예측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하천	◦현지 및 문헌조사 ◦사업계획 분석	◦지형·지질 현황 파악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사면 안정성 등 예측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현지 및 문헌조사 ◦경관변화 예측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수환경의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현지 및 문헌조사 ◦수질영향 예측 ◦수리·수문 해석	◦수질 및 수리·수문 현황 파악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 예측 ◦계획홍수량 등 수리·수문 변화 예측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하천경계로부터 500m)	◦주변 기상대 기상 자료 분석 ◦현지 및 문헌조사	◦기초자료 활용(대기질 항목) ◦대기질 현황 파악(측정망 활용) ◦공사시 건설장비 및 토공작업에 의한 영향 예측
	대기질			
	토 양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문헌조사 ◦토양오염시 처리검토	◦토양현황 파악, 토양오염시 처리방법 검토
	소음·진동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하천경계로부터 500m)	◦소음·진동 예측식 -거리감쇠 공식	◦소음·진동 현황 파악(측정망 활용) ◦발생원 및 공사시 정온시설 영향 범위 예측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문헌조사 ◦원단위 사용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현지 및 문헌조사 ◦사업계획 분석	◦토지이용 현황 파악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파악

제 3 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대안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함
- 본 계획은 병성천권역 지방하천(병성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으로 연장 30.0km를 대상으로 하며, 계획비교, 수단·방법 및 수요·공급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검토함

<표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계획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 (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표 3-2> 대안의 미선정(제외사유)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비고
입 지	◦본 계획은 별도의 개발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대안선정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음	
시기·순서	◦본 계획은 계획홍수위와 기존 제방고를 비교·검토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과 홍수시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가능한 빠른 시기가 최적의 대안임	
기 타	◦본 계획시행에 따른 [기타] 대안은 없으나 향후 하천정비사업시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제시시 적극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3.2 대안별 비교·검토

3.2.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비교·검토

- 계획하천과 관련하여 계획수립(Action)과 미수립(No Action)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적정한 개수계획으로 재해 예방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이 기대되는 대안 1(계획수립시: Action)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3-3>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비교·검토

구 분	대 안	
	대안1: 계획 수립시 (Action)	대안2: 계획 미수립시 (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 계획시행 후 하천점용허가 재검토 등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 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 효율성 저하(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수자원 이용측면	◦ 수자원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 계획되지 않는 하천계획으로 비효율적인 수자원이용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계획하천 주변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및 습지 등이 위치하나,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생태계 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나 소규모의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생태계변화 없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지형의 훼손이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 계획의 시행에 따라 하천 및 인근 지역을 정비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됨	◦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의 침수 등이 예상됨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현 상태가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환경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경관 영향이 예상되나, 그 영향은 공사시에 국한된 일시적 영향으로 판단됨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향후 계획시행에 따라 공사시 일시적으로 환경기준을 상회할 수도 있으나, 공사 완료 후 다시 원래의 환경질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검토결과	◦ 하천은 홍수피해와 하천환경오염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하천정비 및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해방지, 하천의 다목적 관리이용, 환경개선 및 보존 등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 재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을 수립(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됨	

3.2.2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 비교·검토

가. 홍수방어대책

구 분	대안 1 (하천개수계획 수립)	대안 2 (홍수관리구역 지정)	대안 3 (천변저류지 개발)
장 점	◦제방축조에 의한 치수안정성 확보 ◦통수능 확대는 주민들의 홍수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 삶의 질 향상 ◦하천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 개선	◦홍수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홍수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부여, 홍수발생 예상 구역 설정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가능	◦홍수조절 효과 확실 ◦비홍수기 시 주차장, 체육시설 등 시민시설 활용가능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 조절과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는 수질 정화 기능
단 점	◦개수계획 수립으로 인한 기득 사유권 침해에 따라 민원 발생	◦치수적으로 불안전 ◦구역 결정 취지와 다르게 과도한 행위제한 및 사유권 침해 발생	◦대규모 유지 취득 어려움 ◦치수적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음
선정안	◎	◎	

나. 홍수량 설계빈도

구 분	대안 1(50년 빈도)	대안 2(80년 빈도)	대안 3(100년 빈도)	대안 4(200년 빈도)
장 점	◦치수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 ◦편입부지 및 공사비 저렴	◦치수안전 확보 용이 ◦설계빈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향에 부합하는 치수계획 수립 가능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능력이 좋음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능력이 좋음
단 점	◦국지성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 ◦최근 설계빈도 상향 적용 추세에 미치지 못함	◦상대적으로 공사규모가 늘어나게 되어 공사대상지역 증대 ◦치수사업의 규모 증가	◦치수사업 규모 증가로 공사비 및 하천구역 편입면적 증가(민원 우려)	◦치수사업 규모 증가로 공사비 및 하천구역 편입면적 증가(민원 우려) ◦편익비용 검토시 사업성 저하가 우려됨
선정안		◎		
선정사유	◦과도한 개수계획 지양을 위해 제내지 현황 및 유역, 강우 특성 등을 평가하여 적정 설계빈도를 결정하였으며, 사유지 편입 최소화 및 치수경제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3.2.3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검토

- 금회 계획하천에 대한 홍수량 산정시 산정 방법은 “Clark 유역추적법”, “NRCS 무차원 단위도법”, “Snyder 합성단위도법” 등 3가지 방법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단위도의 특성에 대한 제어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Clark 유역추적법’으로 금회 홍수량을 산정하였음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산정공식	Clark 유역추적법	NRCS 무차원 단위도법	Snyder 합성단위도법
내 용	◦유역의 도달시간 및 누가 면적을 통해 순간단위유량도를 유도하여 유출량을 산정	◦단위도의 첨두유량과 첨두유량의 발생시간을 결정한 후 무차원단위도를 사용하여 합성단위도 산정	◦유역의 특성에 따른 상수와 조정된 지체시간을 입력인자로 하는 매개변수 합성단위도 방법
장 점	◦유수의 전이효과 뿐만 아니라 유역의 저류효과도 고려할 수 있음	◦지체시간만을 매개변수로 하므로 적용이 단순함	◦합성단위도법으로 산정방법이 다른 단위도방법과 비교치로 사용
단 점	◦일정규모 이하의 유역에 적용할 경우 저류효과를 산정하는 소유역이 크기가 극소하게 되어 이를 기준하여 적정 홍수량을 산정함이 곤란함	◦경사가 매우 완만한 유역에는 적용성이 떨어짐	◦Snyder방법에 의한 홍수량은 다른 단위도 방법에 의한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어 현실적인 적용성이 매우 낮음
선정안	◎		

제 4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4.1 의견수렴 경위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4.2 의견수렴 계획

4.2.1 평가서 초안 공고

- 본 과업인 병성천권역(병성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4.2.2 평가서 초안 공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해당권역의 행정구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일~40일 이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토록 할 계획임

4.2.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 및 장소는 추후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중 략 ~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4.2.4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기관(대구지방환경청), 관할 도지사(경상북도), 관할 시장·군수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2.5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 공개할 계획임

제 5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개최

- 주관부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1과
- 심의기간 : 2021년 06월 07일(월) ~ 2021년 07월 02일(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평가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심의위원

<표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 분	소 속	직 위	위원명	비 고
위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과 장	김 ○ ○	
위 원	대구지방환경청	과 장	장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계 장	손 ○ ○	
	(주)디에스이앤씨	전 무	박 ○ ○	
	계명대학교	교 수	정 ○ ○	
	경상북도	팀 장	김 ○ ○	
	상주시 건설과	과 장	임 ○ ○	
	상주시 환경관리과	팀 장	김 ○ ○	
	상주시 신흥동	가장5통장	김 ○ ○	
	상주시 동성동	서속13통장	한 ○ ○	
	자연보호 상주시협의회	회 장	김 ○ ○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대구지방환경청(1)	□ 대구지방환경청(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병성천 하천기본계획] 사 업 개 요 ○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영오리·도남동 낙동강(국가) 합류점 ○ 규 모 : 하천 총 연장 30.0km ○ 근 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 제2호 자목「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총괄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나친 인공화는 지양하고 본래의 자연생태계 보존·유지 및 보호구역(생태자연도 1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빈민해소 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방법의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13.1)」 등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하여야 함. 2 심의의견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은 계획이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여야 함.	-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구간 및 그 주변지역에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 -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수리·수문 등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설정 ○ 대상지역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면에 표기 하여야 함. □ 토지이용 구상안 ○ 개별 하천의 생태적 특성 및 하천의 규모, 자연성과 인접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홍수빈도를 산정하고 홍수관리구역 설정 등의 다양한 대안 비교를 통해 친환경적인 하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상 하천 및 구간을 각 하천의 현황에 맞도록 분류하여 체계적인 사업시행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 2011년 기수립된 병성천 하천기본계획에 과도한 친수지구의 설정(약 13.5km)된 지구 중 이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 한정하여 최소화하여 과거 무분별이 설정된 친수지구는 급히 계획에서 해당 구간의 하천 현황을 파악 후 복원, 보전지구로 설정하여야 함. - 초안 작성 시 해당 구역 및 배후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사진 및 도면을 제시하고 친수지구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제시 - 하천 합류부 및 생태적 연결성이 건강한 지역의 친수지구 설정 지양 ○ 제방 및 호안정비 계획은 계획홍수위·하폭·제방 높이를 검토하여 통수 능력 확보에 필요한 구간에 최소한으로 수립하고, 자연 하천 구간은 보전하는 등 불필요한 공사 계획은 지양
□ 대구지방환경청(3)	□ 대구지방환경청(4)
□ 대안 ○ 대안 설정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하천개수와 제방방지 및 치수를 위한 하천 홍수빈도 조정 등의 다양한 대안을 비교·분석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설정 1. 평가 항목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세부평가항목을 적용하여야 함. -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주변지역 여건, 주요 보호 대상시설물, 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구분·설정 2. 평가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 계획구간 중 생태·자연도 1등급(낙동강 합류부 등)이 위치하므로 법정보호종을 포함하여 야생생물 출현 여부에 대한 문헌 및 현지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해당 보호지역이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조사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수경,보완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따라 생태자연도 현황을 작성 - 문헌조사 시 “자연환경조류 동시조사(환경부)”, “제4차 자연환경조사” 자료를 포함하고, 현지조사 시 평가범위는 500m 이상으로 설정(법정보호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서식지 및 활동범위까지) - 자연생태환경 현지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조사시기(식물,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등)에	따라 실시(자연환경조사 등 동결기 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동결기 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보전·저감 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구간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하는 경우(이격거리 제시), 영향여부를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참조(환경부 훈령 제118호, '15.7.17) - 생태계교란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식생확장 및 소형동물의 수생태계 접근성을 제약하는 호안공법(매트리스 돌방배, 식생용벽블럭, 급경사 호안·보축)은 지양하여야 함. - 하천과 주변지역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자연적인 수변식생역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한사면의 식생확장이 가능한 공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 호안공사 지점의 유속 및 소류력 규모를 정밀 진단하여 목재계 및 식생계(식생매트 등) 환경사 호안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친환경성을 확보하여야 함. - 홍수방어벽은 하천 횡단면상 수변부의 수직단차를 유발하는 공법으로 생태적 연결성과 야생동물의 접근성을 제약하므로 지양하여야 함. - 축제 및 하폭 확장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법정보호종 및 소형동물의 탈출 및 이동을 위한 측구의 설치 등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 주거밀집지역 등 야생동물 회피지역은 설치하되, 산지·농경지 및 인구 밀도가 낮은 구간은 환경사의 친환경 호안공법·보축 등 친환경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구지방환경청(5) ○ 대기질, 소음·진동 - 대기질 평가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최소 500m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제시된 항목 모두 측정·분석 (PM-2.5 포함) ○ 수질 및 수리·수문 - 하천변 철저한 수질조사 및 원인분석, 비점오염원 유입 현황조사를 통해 하천수질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2회 이상 수질조사(관수기·평수기·홍수기 등)를 실시하되, 조사 지점 및 횟수 등은 주변환경, 하천특성, 연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정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하천 별로 규모(하폭, 유역면적 등) 및 인접 지역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적인 하천홍수 빈도 설정이 아닌 적정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방 등 하천경비계획 수립 시에는 정확한 홍수량 산정 및 과거 홍수 이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과도한 개발(임야부 절토), 하상정비는 지양하는 등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과거 무분별하게 설치되었거나 주변 수리시설(상·하류저수지) 능력을 파악하여 현재 불필요한 방적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철거 계획을 계획하여 홍수위 저감을 우선 하여야 함. - 하천시설물 능력검토를 통해 기능이 저하·소멸된 시설물은 철거 하고 신규 및 재가설은 지양(기존, 콘크, 철거, 신설 계획 제시) - 하천저질 오염도 평가는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국립환경 과학원예규 제687호, '15.11.16)」를 참조(항목, 기준치 등)하여 평가 - 5 -	☐ 대구지방환경청(6) ○ 경관 - 사업시행 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훼손여부를 검토·예측하여 사업시행 전·후 경관변화를 비교 예측하여 저감방안 수립 * 「기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에 따라 영향분석을 면밀히 실시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주민 의견 수렴 시 의견서 등은 제출자 본인 작성용 원칙으로 하여야 함. - 공람기간 선정 시 공·휴일은 제외하고,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충분히 홍보(공람기간 20일 이상) - 사업추진 전반(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 추가 홍보(안) :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방송 등 □ 기타 ○ 각종 현황조사 자료에 대한 현황화 및 도면 등은 육안판독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도면 등은 육안판독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대, 색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범례를 명시, 환경 현황 측정지점을 명확히 표시 ○ 환경 현황조사 시에는 법적 환경기준에 맞게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대기질, 수질, 저질, 소음·진동 등), 조사항목, 지점, 주기 등을 변경 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6 -
☐ 대구지방환경청(7) ○ 우리청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저가 발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방지하고자 평가 용역의 저가 발주 여부 등을 중점검토하고 있음. - 평가서에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을 검토서” 첨부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운영지침(환경부, '12.10월)」 참조 ○ 사업자는 본 심의의견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2021.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소 속 : 대구지방환경청 성 명 :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 귀하 - 7 -	☐ (주)디에스이앤씨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병성천권역(병성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라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병성천의 이수 및 치수의 안정성과 환경성이 고려된 전라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주민 등 의견 및 환경청 협의결과가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시 계획하천인 병성천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자유하천 기본계획(북천, 청하천, 장산천)등과 친밀습지조성, 하천경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공간관리계획(취수, 복원, 보전)과 이·치수계획(축제, 호안, 보 등)은 안정성, 전수기능 뿐만 아니라 환경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함 3. 대안 ○ 하천시설물(축제, 호안, 횡단시설물) 설치 및 하천계획선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하천특성, 환경성,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시설 및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하천계획임을 감안하여 동·식물상/수질항목은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수질은 수기별 조사를 하여야 하나 2회조사로 계획됨에 따라 수기별 분석이 어려우므로 수질측정망 및 문헌자료로 충분히 보완하여 분석하여야 함 ○ 동·식물상 또한 2회조사로 계획한 바, 분류군별 조사시기를 조절하되, 인접 시방사업, 문헌자료, 탐문조사로 충분히 보완되어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제시된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되, 추가 또는 변경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함 6. 기 타 2021. 6. 14. 심의위원 박

□ 계명대학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병성천권역(병성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담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병성천권역 하천계획수립 평가준비서 내용은 충실하고 평가서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되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담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은 적절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구상안은 타당함 3. 대안 ○ 대안의 설정기준과 검토결과는 타당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 및 방법은 타당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 계획은 적절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1. 6. 29. 심의위원 정	□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병성천권역(병성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담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환경보전방안과 저감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담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 범위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대기질, 소음 평가범위 설정 시에는 인구 밀도가 높아 환경민원(비산먼지, 소음 등)의 소지가 있거나 보존대상 문화재가 인접한 지역의 경우 평가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과거 홍수·가뭄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재해의 위험성·취약성과 생태계훼손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 ○ 제방 및 호안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영향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3. 대안 ○ 하천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수안전도 등을 조사하여 수리 구조물 설계 시 다양한 설계빈도 대안을 제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 범위 등을 설정할 때는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고 설정 근거 및 타당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동·식물상 조사는 계절적 영향을 고려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추가 의견 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이 유역통합치수계획 등 관련 계획 및 지역 환경보전 시책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2021. 7. . 심의위원 김
□ 상주시(건설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병성천권역(병성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담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병성천의 치수안전성 확보 및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담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전변습지조성사업, 하천제해에방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조사하여 대상지역을 연계 검토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치수계획 및 친수계획과 환경보전 등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여야 함 3. 대안 ○ 특히, 현재 계획에서 하천계획선 변경이 있는 구간은 여러개의 대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사료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해당지역의 주민들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해당없음 2021. 06. 14. 심의위원 임	□ 상주시(환경관리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병성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 전담환경영향평가준비서) □ 총괄 의견 ○ 본 사업은 병성천의 지방하천(병성천)에 대해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립 하는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하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선정분석의 적정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전담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담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하천기본계획수립 특성상 하천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계획으로 별도의 개발 대상 일지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사료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목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현재의 주변 자연지형 및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여 수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함. 3. 대안 ○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사료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시행 시 계획구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환경 영향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주변이 주거밀집지역과 논농사가 많은 지역은 대기질 중점 검토 요망.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고 하상 준설 등으로 발생하는 토사유출과 오탁수 영향으로 수생태계보전을 위한 방지책 제시할 것.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인 병성천 하류부에 위치하므로 보존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평가 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6. 기 타 ○ 사업계획구간이 위치하는 지역은 병성A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수질 오염총량검토서 제출후 지역개발 사업부하량을 할당받아서 사업추진 2021. 5. 31. 심의위원 김

□ 상주시 신흥동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병성천권역(병성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판 의 건 ○ 의견없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 주변 현황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이용계획이 수립 되어 할 것으로 사료됨 - 대안 ○ 의견없음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주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병성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렴결과를 절차에 따라 공개 요청 -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주시 가장자리부터 경리면 수상리 하천 가장자리에 경작을 하고 있음. 가족 밭 및 부식비미 사용으로 권소원이 하천에 유입되어 많은 녹조 현상이 나타나, 따라서 하천 주변 불법경작을 권기해야함 2021. 7. 2. 심의위원 김	□ 상주시 동성동(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병성천권역(병성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판 의 건 ○ 1970년대의 병성천 상태가 현재(2021년)와 75%정도 복원되어 가고 있다. 상주시 권역에서 병성천의 정비사업으로 시의 시민생활 공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둬도 뚜렷하지 않으며, 현재 잘 복원되어 가는 병성천을 정비사업 명분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현명 할 것 같다. ○ 병성천 지방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대비와 자연습지와 갈대 숲의 역할이 계속 유지되길 희망합니다. ○ 인위적인 정비는 현재(2021년)와 상태로 복원이 될 가능성 제로(복원 저해 요소 습지 갈대숲 제거로 물, 정화, 정수 상태 분능, 유속 조절, 보 설치)로 여류상태 생존조건 과파 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 정비사업으로 정비된 하천과 비교검토가 꼭 필요한 상황 - 병성천과 복원(정비사업이 된 지역) 하천 바닥의 상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병성천</th><th style="width: 50%;">복원(정비된 곳)</th></tr> </thead> <tbody> <tr> <td>습지와 갈대숲의 정수 정화도 도래가 많다.</td><td>인위적 개발로 인하여 물바닥이 도래보다 자갈이 많아지고 있다.</td></tr> <tr> <td>인근 저류인 소화천 유입수 습지 및 갈대숲에 의해 정화 정수 물이 맑고 투명하다.</td><td>인근 저류 소화천 유입수 바로 합류 하천바닥에 퇴적물이 많아 물의색이 탁하며 바닥이 더럽다.</td></tr> </tbody> </table> - 병성천과 복원(정비사업이 된 지역) 활용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병성천</th><th style="width: 50%;">복원(정비된 곳)</th></tr> </thead> <tbody> <tr> <td>병성천 정비사업에 의한 고수부지와 일시 관리와 높은 유지 보수가 초래된다. 지역생 활과 식민어가 활용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td><td>연중 추계나 행사로 20여일 정도 활용되어 연중 개방된다. 사유임원이 제한적인 것 같다. 관리, 인위 높은 관리비에 비해 필요성이 맞은 것 같다. 하천 바닥에 자갈화 되어 가고 있다.</td></tr> </tbody> </table>	병성천	복원(정비된 곳)	습지와 갈대숲의 정수 정화도 도래가 많다.	인위적 개발로 인하여 물바닥이 도래보다 자갈이 많아지고 있다.	인근 저류인 소화천 유입수 습지 및 갈대숲에 의해 정화 정수 물이 맑고 투명하다.	인근 저류 소화천 유입수 바로 합류 하천바닥에 퇴적물이 많아 물의색이 탁하며 바닥이 더럽다.	병성천	복원(정비된 곳)	병성천 정비사업에 의한 고수부지와 일시 관리와 높은 유지 보수가 초래된다. 지역생 활과 식민어가 활용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연중 추계나 행사로 20여일 정도 활용되어 연중 개방된다. 사유임원이 제한적인 것 같다. 관리, 인위 높은 관리비에 비해 필요성이 맞은 것 같다. 하천 바닥에 자갈화 되어 가고 있다.
병성천	복원(정비된 곳)										
습지와 갈대숲의 정수 정화도 도래가 많다.	인위적 개발로 인하여 물바닥이 도래보다 자갈이 많아지고 있다.										
인근 저류인 소화천 유입수 습지 및 갈대숲에 의해 정화 정수 물이 맑고 투명하다.	인근 저류 소화천 유입수 바로 합류 하천바닥에 퇴적물이 많아 물의색이 탁하며 바닥이 더럽다.										
병성천	복원(정비된 곳)										
병성천 정비사업에 의한 고수부지와 일시 관리와 높은 유지 보수가 초래된다. 지역생 활과 식민어가 활용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연중 추계나 행사로 20여일 정도 활용되어 연중 개방된다. 사유임원이 제한적인 것 같다. 관리, 인위 높은 관리비에 비해 필요성이 맞은 것 같다. 하천 바닥에 자갈화 되어 가고 있다.										
□ 상주시 동성동(2) - 대안 ○ 의견없음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개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병성천에는 약 60세(1963년생)이상 연령대에게는 먹을 감고 늘린 놀이터였으며, 각종 토종 민물고기, 철새, 야생동물의 도래지 이며 서식지였다. 1980년부터 병성천 안에서 농업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각종 생활폐수가 저류인 소화천을 통하여 병성천에 영입되어 하천오염이 가속화 되었으며, 어류가 많이 감소와 되어 왔다. - 병성천 정비 계획 발표후 주변 논사를 절거하고, 병성천내 농업행위를 근절 하는 등 노력을 이어와서, 2015년 이후 현재 병성천내 자연습지와 갈대숲이 복원되어, 많은 종류의 어류(쏘가리, 격지, 모래무지, 가물치, 잉어, 붕어, 피리, 뱀가사리, 자라, 민물장어)등이 현재 생태계를 형성하여, 병성천에 서식하고 있다. - 또한, 민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동물(갯배지, 참, 고리나, 너구리, 오소리)등이 서식, 인평동 인근 산을 오가며 병성천 저류인 소화천을 통로로 활용하여 이동하며 서식을 하고 있다. 현재 수백수로 추정되는 야생동물들이 야간에 병성천 제방을 오가는 모습을 육안으로도 식별가능하다. - 조류(두루미, 백로, 고니, 천둥오리, 뿔, 비둘기, 까치, 까마귀, 참새, 부엉이, 꿩구기, 딱따구리)등이 병성천내 갈대숲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된다. ○ 동·식물상 권의사항 - 병성천 공성면 영오리 - 동등동 화거리까지 합류 소화천 주변 우사(00개)의 조사 및 차후 관리 방안이 시급 - 현재 병성천내 어류종(약100종), 조류(100종), 동물(살을 비웃한 다수종)이 병성천의 물과 먹이 활용이 이루어지며, 합류 소화천을 이동경로 이용 산까지 개체수를 보호수 몇 대 넘을 것으로 추정 이에 생태적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음. - 어류종, 조류서식, 동물 서식에 대한 전문성 있는 조사 요청 - 생태적에 대한 조사평가와 병성천 반경 1km내 우상의 관련된 지류 소화천의 조사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상주시 권역의 활용성 조사 필요 2021. 7. 2. 심의위원 동성동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한	□ 상주시 동성동(3) - 주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주 병성천 정비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 - 지역인구 분포도에 따른 활용성이 10%미만 이 지역은 농업도시로 시인구 45%정도가 농업종사자이며, 15%정도가 청소년 10% 자영업 또는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병성천내에 고수부지 형태의 시설은 관리비용만 과중될 뿐 시민의 생활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추정하며, 자연습지와 갈대밭을 정비사업으로 훼손할 시 병성천으로 유입되는 소화천의 오염수의 정수들 전혀 할 수 없어 병성천내의 수질오염이 많이 오염될 것으로 사료됨. 사태) 공성 영오리에서 공문 화거리까지 병성천 반경 1km내 우사(00개)가 현재 돌밭을 측사내에 부어 사육하는 형태로 이루어 우천시 측사의 분뇨가 소화천으로 많이 영입되는 실정이다. (측사 태두리는 지상 1m가량 담장 시급)이에 따른 소화천내 오염도 (하천) 수질검사가 필요함. 또한, 현재 갈대와 자연습지로 정수를 할 기능이 파손되며 복구 불가능하다. 2021. 7. 2. 심의위원 동성동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한										

□ 자연보호 상주시협의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병성천권역(병성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발 의 건

- 저속가능권 환경영향평가 개발은 하천에 지방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적 환경의 조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저속가능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목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형태의 개발 자연과형 및 경관은 하천을 하천하여 생태적 환경을 조성한다
3. 대안
 - 저속가능권 설정된 것으로 수립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사업 시 저속가능권 고려한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하여
5. 추진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안지역 추진과 이해관계자 등한 대상으로 환경과에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저속가능권 사업계획 수립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2021. 6.

심의위원 김